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	호
------	---	---

제출년월일 : 2007. 5.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사유

- 추석명절 등을 맞이하여 구미시 송조당을 찾아오는 성묘차량의 대량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 하고,
- 추후 공원묘원 및 송조당의 추가 안치수요에 대비하고, 명실공히 구미시 공설송조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

□ 구미시 공설송조당(납골당) 주차장 부지매입

- 토 지 : 8,000㎡(2,420평)
- 예정가격 : 27,734천원(가감정액)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m²)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임야	옥성.초곡리 산11	2,665	8,528	2007년 하반기	구미시 공설송조당 주차장 부지 매입	옥성.초곡리 538번지 박기탁외 2	
2	임야	옥성.초곡리 산13	2,665	9,594	"	"	옥성.초곡리 32 강우석	
3	임야	옥성.초곡리 산14	2,670	9,612	"	"	옥성.초곡리 631 강태구	
	계		8,000	27,734				

취 득 대 상 토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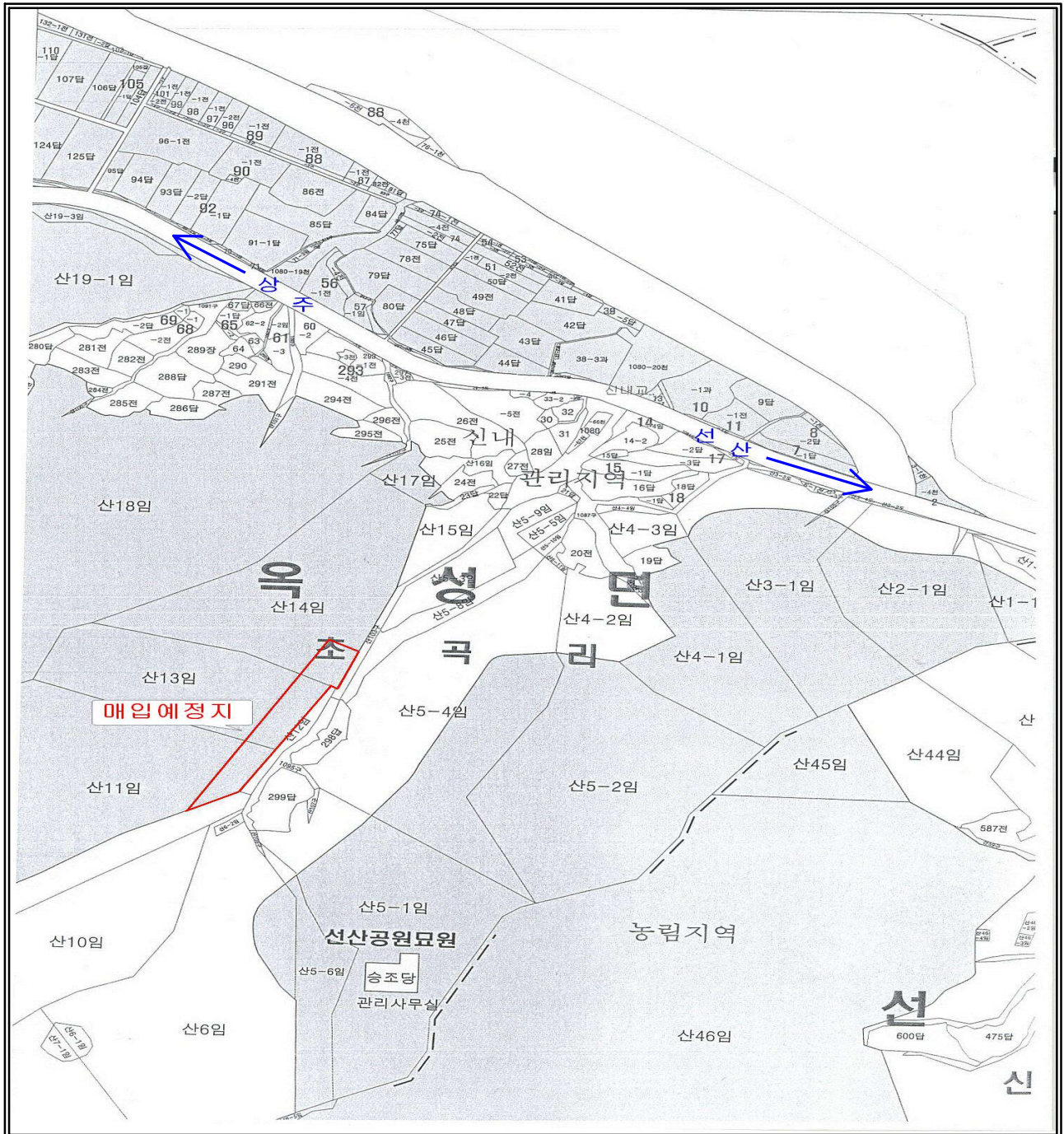
□ 재산의 표시 : 구미시공설송조당 주차장 부지

- ▶ 소재지 :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11번지 외 2필지
- ▶ 지목 : 임야
- ▶ 면적 : 8,000m²

□ 지적도



□ 위치도



□ 예정지 현장 전경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 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